<2021 9급국가 형사소송법개론>

총평

1. 판례관련 지문 43문항, 조문관련 지문 38문항으로 판례와 조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2. 대부분 수사, 공판, 증거 및 증명과 관련하여 출제되었고, 그 외 상소와 소송주체에서 출제되었다. 비교적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인 형사보상이 출제된 것으로 보아, 이 후 수험준비 과정에서도 방심하지 않아야 함을 알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문제에 비하여 형사소송법개론 문제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소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출제된 면이 있다.
4. 전체적 난이도는 무난한 정도로 보인다.

1.
[정답] ①
[해설]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277조의2 제1항)
②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한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③ 제278조
④ 제266조

2.
[정답] ②
[해설] ②
㉠ 적부심청구권 (헌법 제12조 제6항)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보상청구권 (헌법 제28조)
㉣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헌법 제12조 제7항)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3.
[정답] ④
[해설] ④
④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판결)
① 제250조
② 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도5916 판결
③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4.
[정답] ④
[해설] ④
④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7도8989 판결)
① 제8조 제2항
② 제32조 제1항·제2항
③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5.
[정답] ③
[해설] ③
③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①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128조)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29조)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②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 자 99모161 결정)
④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나아가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

6.
[정답] ②
[해설] ②
② 제313조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제313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3조 제2항)
①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7757
③ 대법원 2002.3.26. 선고 2001도5666 판결
④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8735 판결

7.
[정답] ③
[해설] ③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①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②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④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판결

8.
[정답] ③
[해설] ③
③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4222 판결)
①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2338 판결
②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950 판결
④ 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판결

9.

[정답] ④
[해설] ④
④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제161조의2 제1항)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제161조의2 제2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제161조의2 제5항)
① 제150조
② 형사소송규칙 제73조
③ 제162조 제3항

10.
[정답] ①
[해설] ①
①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도87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8도488 판결)
②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10193 판결
③ 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④ 대법원 1980.5.13. 선고 80도765 판결

11.
[정답] ②
[해설] ②
②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46 판결
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공소제기 후 구속·압수·수색 등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12.
[정답] ①

[해설] ①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두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흡수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규범적으로 보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닌데도, 이를 불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②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③ 대법원 1989.1.24. 선고 87도1978 판결
④ 대법원 1999.5.14. 선고 98도1438 판결

13.
[정답] ④
[해설] ④
④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7.1. 자 2013모160 결정)
① 제70조 제2항
② 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③ 제203조의2, 제201조의2 제7항

14.
[정답] ④
[해설] ④
④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09조)
① 제405조
② 제359조
③ 대법원 2002.9.27. 자 2002모6 결정

15.
[정답] ③
[해설] ③

③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8조의3)
① 제286조의2
② 제286조의3
④ 제301조의2

16.
[정답] ④
[해설] ④
④ 상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66조 또는 제393조 등에 의하여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도9112 판결)
①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② 대법원 1996.3.12. 선고 94도2423 판결
③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40 판결

17.
[정답] ③
[해설] ③
③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2109 판결)
① 제214조의2 제8항, 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결정
② 제102조 제2항 제2호, 제403조 제2항(대법원 2020.10.29. 자 2020모633 결정)
④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8.
[정답] ④
[해설] ④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

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182 판결)
① 제328조 제1항 제1호
② 제407조 제1항
③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19.
[정답] ②
[해설] ②
㉠ 제312조 제3항
㉡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285조)
㉢ 제324조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 제279조의2 제1항·제3항

20.
[정답] ③
[해설] ③
③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④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